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시청 공고 제2026 - 17호

「2026년 고용노동부 영주시청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

2026년 고용노동부 영주시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제2026-17호) 관련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5일

대 구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영 주 지 청 장

1.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 명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 명
고용(영주)	인턴01-1	엄 ○ ○	고용(문경)	인턴02-1	장 ○ ○
	인턴01-2	남 ○ ○			
	인턴01-3	박 ○ ○			
	인턴01-5	김 ○ ○			
	인턴01-6	정 ○ ○			
	인턴01-7	권 ○ ○			
	인턴01-8	김 ○			
	인턴01-9	박 ○ ○			

* 서류전형 합격자 별도 개별 통보 예정

2. 면접일시 및 장소

○ 일시: '26. 3. 31.(화) 10:30(영주), 14:00(문경)

○ 면접장소

- 채용분야[고용(영주)]: 고용노동부 영주시청 3층 지역협력팀장실

* 주소: 경북 영주시 번영로 88

- 채용분야[고용(문경)]: 문경고용센터 3층 프로그램실

* 주소: 경북 문경시 매봉1길 67

○ 면접대기: 채용분야별 면접대기장소(각 3층 대회의실)에 면접시작시간 10분전까지 입실 완료(시간엄수)

3. 서류전형 합격자 서류 제출

- '26.3.25~3.26.(목) 18:00까지 청년인재DB(www.2030db.go.kr)로 아래 서류 중 필수서류를 포함한 증빙서류 제출

* 모집공고("면접"- 스캔본으로 제출)

- 정책제안서(필수 제출)
-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필수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가점대상자 증명서(이하 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관련 증명서*
 - * 저소득 해당자의 경우 필수 제출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 우대 관련 필수 제출

4. 응시자 유의사항

- 본인 확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 자격증 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면접일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정된 면접일시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제출 서류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채용) 후에도 허위 기재 또는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 결격사유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 부적격자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근무 중 퇴사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회·조사,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별첨 서식)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 지역협력팀 채용담당자 (☎ 054-639-1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제안서

지원분야		성명		연락처		e-mail	
------	--	----	--	-----	--	--------	--

제 목	청년이 보는 00 정책 ※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지원한 분야의 정책·사업·제도(예: 복지, 노동, 산업, 금융 등)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작성
제안 배경 및 문제점(현황)	
개선안 또는 정책대안	
예상 효과	

○ 정책제안서 작성요령

-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글자크기 : 11, 글자체 : 맑은고딕, 줄간격 : 120%)
- 지원한 기관의 주요 정책 중 청년의 시각에서 느낀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
- * 기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와 정책참여 의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
-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 명	생년월일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명 : (서명)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장 귀하

서식3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면접대상자에 확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